

## 이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1996. 10.  
제출자 : 이천시장

### 제안이유

이천시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효율을 기하기 위함.

### 주요골자

- 가. 이천시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 접용료, 사용료,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함(안 제2조).
- 나. 이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,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 및 공공하수 관거설치 유지관리비, 차입금 이자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함(안 제3조).

## 이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(안)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천시 공공하수도(이하 "하수도"라 한다)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세입) 이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(이하 "특별회계"라 한다) 세입은 하수도점용료 · 사용료,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세입으로 한다.

제3조 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 및 공공하수관거설치 유지관리,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.

제4조 (전입)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세출에 부족액이 생긴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.

제5조 (준용)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를 준용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